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

유럽연합 당사자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1. 모든 분야	<p>유럽연합은 자신이 당사자인 경제통합협정에 기재된 특정 규정, 즉 유럽연합이 어떠한 조치의 개정이 그러한 경제통합협정에서의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관한 의무에 대하여 그 개정직전에 존재하였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그 조치를 개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부터 도출된 차등대우를 국가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권리를 유보함.</p>	모든 국가	무기한	역진방지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차등적인 대우를 보호하기 위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2. 도로운송	루마니아에서,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들에 등록된 운송수단이 상품 및/또는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허가는 기존 또는 미래의 양자 간 도로 협정에 따름. 도로내륙운송은 국내에 등록된 운송수단에 유보됨.	오스트리아, 알바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사이프러스, 크로아티아, 덴마크, 스위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이란,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슬로바키아, 시리아, 슬로베니아, 터키, 헝가리 및 향후 다른 국가도 가능	무기한	예외의 필요성은 도로운송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에 대한 지역적 특수성과 연관됨.
3. 철도운송 - 여객 및 화물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의 영역 내 그리고 관련 국가 간의 운수권, 운영조건 및 운송서비스 제공을 규제하는 조치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철도운송 기반시설 및 환경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 영역 내 그리고 관련 국가 간의 운수권을 규제하기 위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p>4.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p>	<p>공동체/유럽연합 또는 그 회원국과 제3국가 간 체결된 (복합운송 - 도로/철도 포함) 국제도로운임 및 여객운송에 관한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의 다음에 대한 규정 (a)- 계약당사자 간 또는 계약당사자의 영역을 지나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을 각 계약당사자에 등록된 운송수단에 유보하거나 제한¹⁾ 또는 (b)- 그러한 운송수단에 대한 조세 면제</p>	<p>스위스, 중유럽, 동유럽 및 남동유럽 국가와 독립국가연합의 모든 회원국, 알바니아, 터키, 레바논,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쿠웨이트</p>	<p>무기한</p>	<p>예외의 필요성은 도로운송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의 지역적 특성과 연관됨.</p>

1) 오스트리아에 대하여, 운수권에 관한 최혜국대우 면제 부분은 도로운송에 관한 양자간 협정 또는 도로운송과 관련된 그 밖의 약정이 존재하거나 바람직한 모든 국가에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5.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운송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체코공화국으로의 운송서비스, 체코공화국에서의 운송서비스, 체코공화국을 통과하는 운송서비스 그리고 체코 공화국으로부터 관련 계약당사자로서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통과허가 및/또는 특혜도로세를 포함하여 운송서비스 공급을 유보하거나 제한하고 운영조건을 명시하는 조치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철도운송 기반시설 및 환경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체코공화국 영역 내 그리고 관련 국가 간에 운수권을 규제하기 위함.
6.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핀란드에서 내륙운송을 유보한(복합운송, 도로 및 철도 포함) 국제도로운송에 관한 기존 또는 미래의 상호 양자간 및 복수국간 협정의 규정	양자간 또는 복수국간 협정이 발효 중인 모든 국가	무기한	도로운송서비스의 지역적 특수성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7.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오스트리아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들에 등록된 자동차로 외국 기업가들이 수행하는 국제여객운송으로 제한됨.	구 유고슬라비아 승계국들, 스위스 그리고 구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승계국(발트3국,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몰도바 및 우즈베키스탄 제외)	무기한	상호주의 및 국제여행 발전의 촉진
8. 도로운송서비스 - 여객 및 화물	사실상의 상호주의를 근거로 한 일정한 조건에 따른 오스트리아에서의 운송수단에 대한 조세 면제는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에 등록된 운송수단으로 제한됨.	이스라엘, 모나코, 산마리노, 터키, 교황청 그리고 미국	무기한	상호주의 및 국제여행 및/또는 국제상품운송 발전의 촉진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p>9.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p>	<p>양자간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리투아니아 영역으로의 운송서비스, 리투아니아 영역을 통한 운송서비스 그리고 리투아니아 영역으로부터 관련 계약당사자로의 운송서비스, 양자간 통과허가 및 그 밖의 운송허가를 포함하여 운영조건, 도로세 및 부과금을 명시하고 운송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설정함.</p>	<p>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p>	<p>무기한</p>	<p>운송 기반시설 및 환경을 보호하고 리투아니아 영역 및 관련 국가 간의 운수권을 규제하기 위함.</p>
<p>10.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p>	<p>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그 불가리아 영역에서의 또는 불가리아 국경을 지나는, 운송서비스에 대한 통과허가 및/또는 특혜도로세를 포함하여 이러한 종류의 운송서비스 공급을 제한 및/또는 유보하는 조치</p>	<p>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p>	<p>무기한</p>	<p>환경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불가리아 영역 및 관련 국가 간 운수권의 규제</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11. 해상운송을 제외한 모든 여객 및 화물운송서비스	폴란드: 관련 국가들의 공급자들이, 관련 국가의 영역에서, 관련 국가의 영역으로, 그리고 관련 국가의 영역을 통과하는 운송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상호주의 요건	모든 국가	무기한	운송협력(또는 유사한 성격의 것),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증진과 보호 및 특히 양자적으로 합의된 허가체제로부터 발생하는 운송 쿼터를 이행하는 것에 관한 기존 및 미래의 상호적 협정의 체제
12.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슬로바키아로의 운송서비스, 슬로바키아에서의 운송서비스, 슬로바키아를 통과하는 운송서비스 그리고 슬로바키아로부터 관련 계약당사자로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통과허가 및/또는 특혜도로세를 포함하여 운송서비스 공급을 유보하거나 제한하고 운영조건을 명시하는 조치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도로운송 기반시설의 무결성과 환경을 보호하고 슬로바키아 영역 및 관련 국가 간의 운수권을 규제하기 위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p>13. 도로운송 - 화물 (CPC 7123)</p>	<p>스페인에서의 상업적 주재의 설립을 위한 인가는, 스페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거절될 수 있음.</p>	<p>모든 국가</p>	<p>무기한</p>	<p>스페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실효적인 시장접근 및 동등한 대우를 보장할 필요</p>
<p>14. 항공운송 부수 서비스 (a)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의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b)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c) 컴퓨터예약시스템(CRS)서비스, 그리고 (d) 지상조업서비스,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서비스 및 공항운영서비스와 같은 항공운송서비스에 부수적인 그 밖의 서비스</p>	<p>시행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서명되는 모든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게 차등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p>	<p>모든 국가</p>	<p>무기한</p>	<p>기존 및 미래의 국제협정을 보호를 위해 요구됨.</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15. 항공운송서비스의 컴퓨터예약시스템과 판매 및 마케팅	규정(EEC) 제3089/93호에 의해 개정된, 규정(EEC) 제2299/89호의 제7조에 따라, 이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동등한 대우가 그 국가에서 유럽연합 당사자 컴퓨터예약 시스템 판매자 또는 모항공사 및 참여 항공사에게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컴퓨터예약시스템 판매자 또는 모 항공사 및 참여 항공사의 의무가 그 국가의 컴퓨터예약 시스템 판매자 또는 모항공사 및 참여 항공사에게 적용되지 아니함.	컴퓨터예약시스템 판매자 또는 모항공사가 소재하는 모든 국가	무기한	컴퓨터예약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다자적으로 합의된 규칙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외의 필요성
16.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내 상품과 관련한 서비스를 포함한 항만 내 화물취급서비스와 보관, 창고 서비스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를 공급할 권리는 상호주의를 근거로, 그리고 관련 국가와의 양자 협정에 따라 불가리아에 의해 부여됨.	모든 국가	무기한	그러한 조치의 적용 목적은 그러한 종류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불가리아 공급자에 대해 그 밖의 국가의 시장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17. 내수운송	내륙수로에의 접근에 관한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라인-마인-다뉴브 연결 협정을 포함)에 근거한 조치로서, 관련 국가에 근거를 두고 소유에 관한 국적기준을 충족시키는 운영자를 위해 운수권을 유보하는 조치	스위스, 중유럽, 동유럽 및 남동유럽 국가와 독립국가연합의 모든 회원국	무기한 일정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경제통합협정이 체결되거나 완성될 때까지만 예외가 요구됨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륙수로에 대한 운송 능력을 규제하기 위함.
18. 내수운송	라인강 화물운송에 대한 만하임 협약을 이행하는 규정 ²⁾	스위스	무기한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륙수로에 대한 운송 능력을 규제하기 위함.
19. 내수운송 - 여객 및 화물	오스트리아에서, a. 일정한 운수권은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의 선박을 위하여 유보됨(소유에 관한 국적 요건), 그리고 b.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의 증명과 면허가 인정됨.	구 유고슬라비아 승계국 그리고 구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연방 승계국	무기한, 그리고 예외는 기존의 조치 및 새로운 조치에 적용됨.	역사적 발전, 그리고 특정한 지역적 측면

2) 다음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최혜국대우 면제가 적용된다 :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및 영국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20. 내수운송 - 여객 및 화물	기존 그리고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슬로바키아의 내륙수로에 대한 접근 및 내륙수로에서의 운수권을 외국의 운영자를 위해 유보하는 조치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기반시설의 무결성과 환경을 보호하고 슬로바키아에서의 운수권을 규제하기 위함.
21. 해상운송	부속서 7-가에서 대한민국의 약속을 넘는 조치로서 해운회사의 설립,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조치	특정되지 않음.	무기한	전반적인 무역관계의 맥락에서의 국제협정
22. 해상운송 - 연안해운	특정된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고 등록된 선박을 핀란드에서의 연안해운 운영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면제하는 조치로서 핀란드에 의해 취해진, 기존 또는 미래의 상호적 조치	모든 국가	무기한	연안해운의 지역적 특수성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23. 해상운송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고 등록된 선박을 스웨덴 연안해운 운영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면제하는 조치로서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근거한 조치로서 스웨덴에 의해 취해진 상호적 조치	양자간 또는 복수국간 협정이 발효 중인 모든 국가	무기한	상호 협정에 근거한 연안해운 운수를 규제하기 위함.
24. 선박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CPC 83103) 선원 포함 선박 임대 (CPC 7213, 7223).	독일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의한 외국선박의 용선계약은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할 수 있음.	모든 국가	무기한	독일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시장접근 및 동등한 대우를 보장할 필요
25. 수산	유럽연합은 시행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서명되는 수산 관련 모든 양자 또는 복수국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게 차등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모든 국가	무기한	기존 그리고 미래의 양자 및 복수국간 국제협정의 보호를 위해 요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26. 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	특히 발틱해 유역에서의 국제보존 관행 및 정책 또는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폴란드가 우호적인 수산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 관련 국가들의 어업 관할권 지역에서의 - 특혜 대우	모든 국가	미정	기존 그리고 미래의 협정뿐만 아니라 관행을 근거로, 특히 발틱해 유역에서의 어업 및 수산 보전에 관한 협력
27. 법률서비스	외국변호사는 법률 지원에 관한 양자 협정에 따라서만 리투아니아 법원에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음.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적법성과 책임을 통제할 능력을 보장할 필요
28. 법률서비스	불가리아에서, 서비스 공급뿐만 아니라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완전한 내국민대우는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에서 설립된 회사 및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의 시민에게만 부여될 수 있음.	특혜 협정이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국가	무기한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29. 보건의료서비스	양자간 협정이 서명되었거나 미래에 서명될 선택된 국가에서 사이프러스 국민에게 사이프러스에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의료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	의료 협력이 바람직할 수 있는 모든 국가	무기한	그 조치는 사이프러스와, 사이프러스가 지리적 인접성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제3국과의 양자간 협정이 존재하거나, 새로운 양자협정을 미래에 서명할 가능성 때문에 필요함.
30. 의료 및 치과 서비스	불가리아의 영역에서 외국 시민에게 제공되는 의료 및 치과 서비스와 관한 비용과 지출을 부담하는 공공의료보험, 보조금 지급과 보상 계획 및 프로그램은 양자 협정의 틀 내에서 상호주의를 근거로 부여됨.	그러한 양자 협정이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국가	무기한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31. 공공 사회보장서비스	사이프러스와 일정한 국가들 간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양자 협정의 규정	호주, 이집트, 캐나다, 퀘벡주 및 미래에 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 모든 국가	무기한	채약당사자의 사회보장법령의 적용대상이거나 적용대상이 된 인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할 경우 사회보장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함. 특히, 혜택을 받을 자격을 목적으로 채약 당사자에서 보험 또는 거주 기간의 합산을 규정하는 이 협정들은 사이프러스와 노동 이동이 있는 국가들 간에 체결됨.
32. 출판 (CPC 88442의 일부)	이탈리아에서 회사의 자본 및 의결권 49퍼센트를 초과하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참여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함.	모든 국가	무기한	이탈리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시장접근과 동등한 대우 보장 필요
33. 뉴스제공서비스 (CPC 962의 일부)	프랑스어로 된 출판물을 출판하는 프랑스 회사의 자본 또는 의결권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참여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함.	모든 국가	무기한	프랑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시장접근과 동등한 대우 보장 필요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기간	예외가 필요해지는 조건
34. 뉴스제공서비스 (CPC 962의 일부)	프랑스에서의 시장접근.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함.	모든 국가	무기한	프랑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시장접근과 동등한 대우 보장 필요
35. 토지 구매	리투아니아공화국의 헌법에 따라 유럽통합 및 그 밖에 리투아니아가 동참하고 있는 통합의 기준을 준수하여 헌법이 지정한 경제적 활동을 리투아니아에서 영위하고 있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내국 실체와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의 외국인 실체들은 그들의 직접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농경지 토지를 그들의 소유가 되도록 취득하는 것이 허용됨. 이와 같은 토지취득 절차, 조건 및 제약은 헌법에 따라 설정됨.	헌법에 따라 결정된 모든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 ³⁾ ,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³⁾ , 및 유럽연합의 준회원국	무기한	리투아니아와 관련 국가들 사이의 큰 경제적 협력을 위하여, 더 우호적인 조건을 조성할 필요

3) 다만, 이 국가들이 1996년 6월 20일 이전에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인 경우에 한정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기간	예외가 필요해지는 조건
36. 관광안내서비스	리투아니아에서, 외국 관광가이드는 관광안내서비스 지원에 관한 양자간 협정(또는 계약)에 따라서만 관광안내 서비스를 상호주의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협정(또는 계약)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문화적 정체성의 보존 및 증진
37. 모든 분야	사이프러스 :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와 관련하여 자본의 이동을 포함하여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지역에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의 면제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들	무기한	상업적 주재의 점진적 자유화.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 중 일부 국가와의 상호 투자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양자협정이 준비 중임.
38. 모든 분야	노르딕 협력 증진을 목표로 덴마크, 스웨덴 및 핀란드에 의해 취해진 다음의 조치 (a)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노르딕 산업기금) (b) 국제 프로젝트를 위한 타당성 연구 자금 조달 (프로젝트 수출을 위한 노르딕 기금), 그리고 (c) 환경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⁴⁾ 에 대한 재정적 지원(노르딕 환경 재정 공사)	아이슬란드 및 노르웨이	무기한	노르딕 협력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함.

4) 하나 이상의 노르딕 기업과 협력중인 동유럽 기업들에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기간	예외가 필요해지는 조건
39. 모든 분야	<p>폴란드 :</p> <p>부속서 7-가에 포함된 폴란드를 위한 제한을 넘어서는, 다음에 포함된 상업적 주재의 개념</p> <p>(a) 통상 및 항해 조약</p> <p>(b) 사업 및 경제 관계 조약, 그리고</p> <p>(c) 외국인 투자협정의 증진 및 보호</p>	모든 국가	미정	기존 그리고 미래의 협정의 상호주의 규정
40. 모든 분야	<p>폴란드는 폴란드가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의 강제 중재 절차를 규정한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국가의 서비스 공급자가 제기하거나, 그와 관련된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의 강제적인 중재를 수락함.</p>	모든 국가	미정	외국인 투자의 증진과 보호
41. 모든 분야	<p>상호주의적으로 외국의 자연인 및 법인의 이탈리아에서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허가</p>	모든 국가	무기한	상호주의 요건은 그 밖의 국가에서의 이탈리아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기간	예외가 필요해지는 조건
42. 모든 분야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이 포르투갈에서 행하는 일정한 활동 및 직업을 위한 국적 요건의 면제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앙골라, 브라질, 카포베르데, 기니비사우, 모잠비크 및 상투메프린시페)	무기한	이 조치는 포르투갈과 이러한 국가들 간의 역사적 연계성을 반영함.
43. 모든 분야	일정한 유럽연합 회원국 ⁵⁾ 과 관련 국가들 및 공국들 간의 기존 또는 미래의 양자 협정에 근거한 조치로서 자연인과 법인의 설립권을 규정하는 조치	산마리노, 모나코, 안도라, 그리고 교황청	무기한	유럽연합 회원국과 관련 국가들 및 공국들 간의 지리적 상황과 역사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연계성

5) 다음의 회원국들이 적용대상이 됨: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및 영국

대한민국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최혜국대우와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기술)
1. 모든 분야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서명된 다음의 분야에 관한 국제협정상 국가들에 대해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가) 수산, 또는 (나)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2. 모든 분야	대한민국은 자신이 당사자인 경제통합협정에 기재된 특정 규정, 즉 대한민국이 어떠한 조치의 개정이 그러한 경제통합협정에서의 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관한 의무에 대하여 그 개정직전에 존재하였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그 조치를 개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부터 도출된 차등대우를 국가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권리를 유보함.
3. 항공운송 부수 서비스 (a)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의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b)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c) 컴퓨터예약시스템(CRS)서비스, 그리고 (d) 지상조업서비스,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서비스 및 공항운영서비스와 같은 항공운송서비스에 부수적인 그 밖의 서비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서명된 항공운송 부수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4. 취약집단	대한민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 권리나 특혜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최혜국대우와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기술)
5. 사회서비스	대한민국은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서비스인 범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훈련, 보건, 그리고 보육
6. 커뮤니케이션서비스 - 방송서비스	대한민국은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서비스와 디지털오디오서비스에 대하여,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보장과 관련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7.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서비스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 서명된 철도운송 분야에 관한 국제협정상 국가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8.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택시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서비스)	대한민국은 택시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9. 운송서비스 - 도로화물운송서비스(쿠리어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서비스는 제외)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카보타지는 제외)과 쿠리어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은 도로화물운송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10. 운송서비스 - 내수운송서비스 및 우주운송서비스	대한민국은 내수운송서비스 및 우주운송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최혜국대우와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기술)
<p>11. 교육서비스</p> <p>-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및 그 밖의 교육</p>	<p>대한민국은 유아·초등·중등교육, 보건·의료 관련 고등교육, 유아·초등·중등 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에서의 원격교육(학점, 졸업장 및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한 성인 교육은 제외), 그리고 그 밖의 교육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p> <p>이 유보항목은 해외용도를 위한 교육 시험 운영에 적용되지 아니함.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내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 시험을 선택하고 적용하거나, 학교 교육과정을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p>
<p>12. 사회서비스</p> <p>- 보건의료서비스</p>	<p>대한민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p> <p>이 유보항목은 <i>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i>(법률 제9216호, 2008.12.26.) 및 <i>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i>(법률 제9526호, 2009.3.25.)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유사 시설의 설치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함.</p>
<p>13. 레크리에이션 문화·스포츠 서비스</p> <p>- 영화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p>	<p>대한민국은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와 관련한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최혜국대우와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기술)
<p>14. 운송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여객운송서비스와 연안해상운송 	<p>대한민국은 아래의 조치를 포함한 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운송 및 대한민국 선박의 운영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p> <p>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하여야 하고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p> <p>연안해상운송은 대한민국선박에 유보되어 있음. 연안해상운송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소재하고 있는 모든 항구간 해상운송을 포함함. 대한민국선박이라 함은 다음을 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대한민국 정부, 공기업 또는 국토해양부 산하 설립기관이 소유한 선박 (b)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c)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p>외국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기업으로서,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 경영 책임자, 회장, 또는 유사한 주요 수석 상사)가 대한민국 국민인 기업 소유의 선박. 1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p>